

의안번호	2204352
의 퇴 인	백승아 의원
회 답 일	2024.10.16.
추계번호	24C4103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4,100만원, 2030년 1억 4,400만원 등 향후 5년간(2026~2030년) 총 7억 1,400만원(연평균 1억 4,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연구윤리의 확보 (안 제15조)	141	142	143	143	144	714	143

주: 한국연구재단의 제조사 연평균 신청건수 및 비용을 준용하여 추정한 값이며, 실제 제조사 방식·단가 및 건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5조 (연구윤리의 확보)	(제5항)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원활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6항) 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및 제4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요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2	안 제15조의2 (연구윤리 실태조사)	(제1항) 교육부장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현황, 연구윤리지침의 운영, 제15조 제4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 시행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관계 대학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항)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4항)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결과 공개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¹⁾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5조 (연구윤리의 확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이에 대한 위탁비용을 지급할 경우의 비용을 추계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1) 안 제15조의2(연구윤리 실태조사)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연구부정행위 발생 현황, 연구윤리지침의 운영, 연구윤리규정 시행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에 출연하여 연구윤리 제도 및 조직, 연구부정행위 발생 및 판정, 연구윤리 교육·예방·확산 등에 대한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연구윤리정보포털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는 해당 조사와 동일한 것으로보아 추가재정소요를 계상하지 않음. 참고로, 해당 조사에 따라 발간된 ‘2022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2023.12.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내용에는 “연구윤리규정 및 지침 현황”, “연구 부정행위 발생 및 판정 현황”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4년도의 관련 예산(연구윤리정보포털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사업)은 5,100만원임. 다만, 개정안 시행 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 중인 실태조사 이외에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교육부 내 담당 부서에서 기존인력과 예산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실시할 경우의 비용을 추계
- 개정안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횟수 등을 예상하기 어려우나, 본 추계서에서는 관련 업무 건수 및 비용을 ‘한국연구재단’에 접수된 재조사 신청 건수 및 재조사 소요 비용으로 준용
 - 한국연구재단은 직접 지원한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중 제보자로부터 연구부정행위 재조사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로 조사소위를 구성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²⁾³⁾, 2018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6년간 재조사 신청은 총 31건⁴⁾이었음⁵⁾
 - 이에 본 추계서에서는 한국연구재단에 접수된 연평균 재조사신청 건수를 준용하여, 매년 5건의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것으로 가정
 - 또한, 한국연구재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직접 재조사 실시에 소요되었던 비용은 전문가활용비(회의참석수당 및 서면검토수당)와 관리운영비(회의 및 행사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국내여비)이므로, 본 추계서에서도 조사 1회당 동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하되, 관리운영비는 추계기간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개정안 심사 기간과 개정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점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위탁조사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조사 1건당 위탁비용인 전문가활용비와 관

2) 1차 조사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직접 실시하며, 연구기관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제보자)가 재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연구재단이 그 필요성을 검토한 뒤 재조사를 실시

3)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중인 재조사를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이미 실시중인 사업’으로 본다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국연구재단의 재조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고유사업비 출연금으로 실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는 실시 주체와 소관 재원이 상이하여 본 추계서에서는 추가재정소요로 추정함

4) 이 중 직접 재조사를 실시한 건은 1건임 (자료: 한국연구재단)

5) 다만, 한국연구재단의 재조사 대상에는 대학 등의 자체연구활동과 한국연구재단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과제는 제외되어 개정안 시행 후 조사 횟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리운영비에 연간 조사 건수를 곱하여 추계

- (전문가활용비) 한국연구재단이 제출한 연구부정행위 재조사시 활용된 전문가 인원수(최대 6명), 수당 단가(회의참석수당 20만원 및 서면검토수당 20만원), 회의 횟수(9차)를 준용하고 해당 값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관리운영비) 한국연구재단의 재조사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전문가활용비를 제외한 회의 및 행사개최비 등을 준용하며, 해당 값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

[표 2] 재조사 1회당 소요 비용 단가(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재조사 비용	전문가활용비	21.6	21.6	21.6	21.6	21.6	108	21.6
	관리운영비	6.7	6.8	6.9	7.0	7.2	34.7	6.9
	합 계	28.3	28.4	28.5	28.7	28.8	142.7	28.5

주: 1) 한국연구재단의 재조사 비용을 준용하여 추정한 값임

2) 전문가활용비에는 회의참석수당 및 사전검토수당이 포함하였으며, 실제 재조사시의 인원(6명)과 회의 횟수(9회)를 준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조사건수) 2018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한국연구재단에 접수된 연간 평균 재조사 신청 건수(5건)를 준용하고, 해당 건수가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4,100만원, 2030년 1억 4,400만원 등 향후 5년간(2026~2030년) 총 7억 1,400만원(연평균 1억 4,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연구부정행위 재조사 비용 추계: 2026년~2030년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연간 조사건수	5	5	5	5	5	30	5
조사 단가	28.3	28.4	28.5	28.7	28.8	—	28.5
합 계(C=A×B)	141	142	143	143	144	714	143

주: 한국연구재단의 재조사 비용을 준용하여 추정한 값이며, 실제 재조사 방식·단가 및 건수 등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한국연구재단의 재조사 건수 및 비용을 준용하여 추정한 값이며, 실제 재조사 방식·단가 및 건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